

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업체의 지정기준(제31조 관련)

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

가. 회수설비

- 1) 회수설비는 회수설비의 각 연결부, 필요한 정비절차, 부품의 교체 및 수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작동지침서가 제공된 것일 것
- 2) 회수장치에 필터나 건조기가 포함된 경우 그 교체시기가 표시되는 것일 것 (재생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)
- 3) 비응축물질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것이거나 제거절차에 관한 지침이 제공된 것일 것(재생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)
- 4) 비응축물질의 제거, 오일배출 및 오존층파괴물질에 포함된 불순물의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총 손실이 회수설비가 처리할 수 있는 오존층파괴물질 총량의 3% 미만일 것
- 5) 2종류 이상의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회수설비의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회수설비 내부에 남아 있는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 것
- 6) 다음 사항이 회수설비 외부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되어 있을 것
 - 가) 제조자명
 - 나) 회수설비의 형식(회수용 또는 회수·재생용)
 - 다) 회수 가능한 오존층파괴물질
 - 라) 회수 속도
 - 마) 최종 회수 부압
 - 바) 회수작업이 완료된 경우 회수설비에 남아 있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양

나. 수용시설

회수된 오존층파괴물질이 누설되지 아니하게 저장할 수 있는 회수용기(회수설비에 내장된 회수용기를 포함한다)를 보유하고 있을 것

2. 할론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

제1호의 “프레온계 오존층파괴물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”와 같다.